

7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[소상공인]

I 지원개요

- 지원대상: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근소한 차이로 희망회복자금을 단기 기준으로 지원받은 6업종* 소상공인
 - *6업종: ①직접판매홍보관, ②식당·카페, ③실내체육시설, ④교습소·학원, ⑤직업훈련기관, ⑥실내스탠딩공연장
- 신청기간: `21. 9. 9.(목) ~ 11. 30.(화)
- 신청방법: 온라인(원칙) 또는 현장방문
- 지원금액: 사업체별 30만원 또는 50만원

II 세부 지원계획

□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

지원대상 6업종	지원금액	비고
(집합금지) ①직접판매홍보관 (영업제한) ②식당·카페, ③실내체육시설, ④교습소·학원, ⑤직업훈련기관, ⑥실내스탠딩공연장	50만원 (`20.8.16일 이전 개업)	다수사업체 운영 시 지원대상업종에 한해 4개소까지 인정
	30만원 (`20.8.17일 ~`21.6.30일 기간 중 개업)	

*희망회복자금 방역이행일 산정기간: `20. 8. 16일 ~ `21. 7. 6일

□ 지원요건

- 공통
 - (소상공인) 희망회복자금 수령 및 지원대상 6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
 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상 `21. 6. 30. 이전 개업
 - (사업장 소재)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
 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-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 - *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(위임장) 필요
- (다수사업체) 지원대상 6업종에 한해 최대 4개 사업체*까지 인정
 - *희망회복자금의 경우,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인정한 사례 반영

□ 지원금액

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에 따라 사업체별 차등 지급
 - `20. 8. 16일 이전 개업 사업체: 50만원
 - `20. 8. 17일 ~ `21. 6. 30일 기간 중 개업 사업체: 30만원
- (다수사업체) 1인이 희망회복자금 수령 및 지원대상 6업종에 해당하는 다수사업체 운영 시, 사업체별 개업일에 따라 최대 4개소,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

(예시1) `20.6월 이전 개업한 식당 2개소 운영 → 50만원×2=100만원

(예시2) `20.8.15일 이전 개업한 식당 1개소, 소매점 1개소 운영 → 50만원

(예시3) 20.7.1일 개업한 식당 1개소, 21.2.1일 개업한 학원 1개소 운영 → 50만원+30만원=80만원

- ☞ 신속 지급을 위해 1개 사업체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,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10. 1일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심사·지급

□ 지원 제외대상

- 비영리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 - * 「사회적기업 육성2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
-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(고발, 과태료 부과 등)
- 사업체 대표자가 소득안정자지원금(노점상) 수급자인 경우
-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(관광사업체, 특고·프리랜서)

Ⅲ 신청방법

□ 신청(지급)자격 *현장방문 신청 시, 신분증 지참

-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, 공동대표자 중 1인, 가족대리 신청
 - (법인사업체) 법인 인감·등기부등본·통장, 위임장 등 구비하여 신청
 - *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
 - (다수사업체)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각 1부,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(중기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출력) 등 구비하여 신청
 - (공동대표)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등 구비하여 신청

- (가족 대리신청)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,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

*현장방문 신청만 가능

- (가족명의 계좌 수령)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명의 통장사본,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·확약서 등 구비하여 신청

*현장방문 신청만 가능, 계좌압류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 수령 가능

□ 온라인 신청(원칙)

○ 기간: `21. 9. 9.(목) ~ 11. 30.(화)

○ 방법: 홈페이지(happydream.jeju.go.kr) 신청

- ① 본인인증(휴대폰 인증)
- ②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
- ③ 통장계좌 인증
- ④ 사업자등록증 및 희망회복자금 수령확인서류 첨부



□ 현장방문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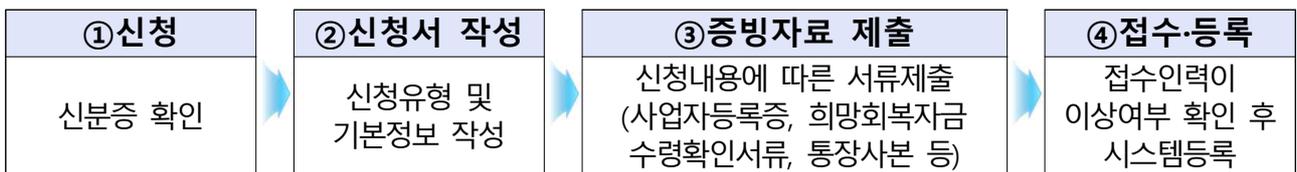
○ 기간: `21. 10. 1.(금) ~ 11. 30.(화) 09:00 ~ 18:00 *공휴일 제외

○ 장소: 제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(제주시 연삼로 473, ☎064-800-6600)

○ 대상: 법인사업체, 가족 대리신청,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

○ 방법: 신분증 지참,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
- ① 방문자 본인 신분증 확인
- ②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


제출서류

공 통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, 희망회복자금 수령확인 서류(지급확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), 통장사본
- (법인사업체) 법인 인감·등기부등본·통장, 위임장, 방문자 신분증 등
- (다수사업체)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,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(중기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출력)
- (공동대표) 위임장
- (가족 대리신청)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(가족명의 계좌 수령) 위임장, 위·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명의 통장사본,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·확약서

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

- (대상자 결정) 희망회복자금 수급 여부, 휴·폐업 여부, 신청서류 구비 여부,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
- (지급) `21. 9. 15.(수)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
*다수사업체의 경우, 1개 사업체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,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10. 1일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후 심사·지급
- (이의신청)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현장방문 신청

중복수급 · 부정수급 · 오지급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

관련문의

- 온라인 문의: 홈페이지(happydream.jeju.go.kr) 문의게시판
- 전화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(☎064-710-3076)
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(☎064-800-6600)

[소상공인]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

신청인정보	업체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주민등록번호	
	사업개시일상 (사업자등록증상)	년 월 일	휴대폰번호 (전화번호)	
	사업장주소			
희망회복지금 급부여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			
업종구분*	집합금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판매홍보관		
	영업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실내스탠딩공연장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업훈련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실내체육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습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식당·카페
다수사업체 수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다수사업체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	
다수사업체	2	업체명/업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	사업장주소	서류제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
	3	업체명/업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	사업장주소	서류제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
	4	업체명/업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	사업장주소	서류제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
입금계좌	은행명: _____ 예금주명: _____ 계좌번호: _____			
<p>본인은 위와 같이 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』 지원을 신청합니다.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이며, 허위일 경우 지원금이 취소·환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1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_____ (인, 서명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
제출서류 ※ 현장 방문신청 시, 신분증 지참				
필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련 확인 및 동의서(제2호 서식) 2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. 희망회복지금 수령확인서류(지급확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) 4. 통장사본 			
해당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인사업체: 법인 인감·등기부등본·통장, 통합 위임장(제3호 서식) 2. 다수사업체: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, 희망회복지금 지급확인서 3. 공동대표: 통합 위임장(제3호 서식) 4. 가족 대리신청: 통합 위임장(제3호 서식), 위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5. 가족명의 계좌 수령: 통합 위임장(제3호 서식), 위수임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명의 통장사본, 타인명의 계좌신청서(제6호 서식)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(제7호 서식) 			

[소상공인]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

1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

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』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 집 항 목	보유 및 이용기간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인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, 계좌번호 등 대리인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위임자와의 관계 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동의 미동의

2. 고유식별정보 동의

수집 및 이용 목적	수 집 항 목	보유 및 이용기간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	본인 및 대리인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

※ 기타 고지: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동의 미동의

2 부정수급 금지

- 아래 확약인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을 확약합니다.
- 아래 확약인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, 증빙서류,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」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-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, 지원금 환수 및 「보조금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」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☞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? 동의 미동의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.

2021년 월 일

동의 및 확인자 (인, 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<제3호 서식> 통합 위임장(해당 시)

통합 위임장 ※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, 각 위임자마다 작성

1. 위임하는자(위임자) 정보			
성명(대표자)		업체명(법인명)	
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주 소	
사업자등록번호		휴대폰번호 (전화번호)	
위임사유 * 해당하는 사유에 "√" 표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대표(법인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성년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명의 계좌 수령(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)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 대리 신청 등(사유: _____)		
2. 위임받는자(수임자) 정보			
성 명		위임자와의 관계	
주민등록번호		휴대폰번호 (전화번호)	- -
주 소			
3. 위임내용			
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』을 진행함에 있어,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			
2021년 ____월 ____일			
위임하는 자(위임자): _____ (인, 서명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이용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			
수집 및 이용 목적	수 집 항 목	보유 및 이용기간	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향후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업무	○ 본 인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, 계좌번호 등 ○ 대리인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위임자와의 관계	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	
2021년 ____월 ____일			
위임받는 자(수임자) : _____ (인, 서명)			
※ 이해 당사자(공동대표자, 미성년자,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)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,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			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			

<제4호 서식> 이의 신청서(해당 시)
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 이의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휴대폰번호	
	업체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주소			
안내받은 날짜	2021. . .			

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	
구비 서류	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
처리기간 안내	부지급 안내를 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상기 본인은 “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”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월 일

신청자 : _____ (인, 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<제5호 서식>
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		
신 청 인	성 명	
	생년월일	
	주 소	
	휴대전화	
이의신청 연월일	2021. . .	
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		
<p>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		
2021년 월 일		
제주특별자치도지사 (관인생략)		

<제7호 서식>

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 본인계좌 이용 동의·확약서

1. 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』의 신청인 ()가
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』을 지급받기 위하여
본인의 아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‘동의’합니다.

○ 계좌번호 :

○ 은행명 :

○ 예금주 :

○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:

2. ()에게 지급될 『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소상공인)』
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
()에게 전해 줄 것을 ‘확약’합니다.

2021년 월 일

동의 및 확약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